

투자설명서

농협CA 아이사랑 적립 주식투자신탁 1호

이 투자설명서는 **농협CA 아이사랑 적립 주식투자신탁 1호** 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CA 아이사랑 적립 주식투자신탁 1호** 수익증권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명 : 농협CA 아이사랑 적립 주식투자신탁 1호

2. 투자신탁의 종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3. 자산운용회사명 : NH-CA 자산운용주식회사 (www.nh-ca.com)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02-368-3600)

4. 판매회사명 : 농협중앙회등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1588-210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는 않습니다.

5. 작성기준일 : 2008년 10월 20일

6.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및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H-CA자산운용
NH-CA ASSET MANAGEMENT

A Joint Venture with  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목 차

[투자설명서 요약]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투자전략
3. 주요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나. 연평균 수익률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주식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1. 자산평가
2. 기준가격 산정

III. 투자증권, 장내폐생상품 거래시 증개회사의 선정기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사업년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에 관한 사항

1. 판매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1. 수탁회사의 개요
2. 수탁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IV.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2.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채권평가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내용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에 관한 사항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4쪽)

- 투자신탁의 명칭 :** 농협CA 아이사랑 적립 주식투자신탁 1호 (자산운용협회 등록코드: 48859)
-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분류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 • 추가형 • 개방형
- 자산운용회사 :** NH-CA 자산운용주식회사

II 투자정보 (본문 4~5쪽)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 및 주식시장 상승 대비 초과 수익률 획득을 목표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약관상 편입비율(60%이상 100% 이하) 범위 내에서 주식에의 투자비율을 조정합니다.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하여 좋은 종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다양한 투자 기법 구현하여 시장수익률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물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되므로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 투자에 따른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높은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5. 기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h-ca.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펀드수	운용자산규모	
김영준	주식본부장	59	2조1천억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자산운용 16년, 조사분석 5년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본부를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위:%]

기 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07.09.01 ~08.08.31	06.09.01 ~08.08.31	05.09.01 ~08.08.31		05.05.02 ~08.08.31
투자신탁	-25.90	8.36	11.74		14.86
비교지수*	-20.05	4.53	10.61		15.47

I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본문 6~7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자산운용회사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보수합계
		순자산총액의 0.6% 순자산총액의 1.4% 순자산총액의 0.03% 순자산총액의 0.017% 순자산총액의 2.047%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0.6575%
		총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2.7045%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투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9.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09. 12. 31까지 투자신탁에 적립식으로 3년이상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적립식 계좌의 계약을 3년이상으로 갱신할 경우 불입금액의 일정비율(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page 7 참조)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 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 (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p>D D+1 자금납입 (3시 미전) 수익증권 매입 (D+1 기준가격 적용)</p>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 (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p>D D+1 D+2 자금납입 (3시 이후) 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격 적용)</p>
환 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2 영업일 (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 (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p>D D+1 D+2 D+3 환매청구 (3시 미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p>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 (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 (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p>D D+1 D+2 D+3 환매청구 (3시 이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p>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성명) 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취득권유인

200 . . .

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농협CA 아이사랑 적립 주식투자신탁 1호(자산운용협회 등록코드: 48859)							
2. 신탁계약기간 및 회계기간	1)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2) 신탁회계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종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4. 자산운용회사	NH-CA 자산운용주식회사(02-368-3600)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 2005년 5월 2일 최초설정. - 2005년 6월 7일부터 'Late Trading'이 적용되어 15:00시 이후에 설정,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6. 수탁고증여	[단위: 억원, %]							
	연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2년전	2년6개월전	3년전
		08.08.31	08.02.29	07.08.31	07.02.28	06.08.31	06.02.28	05.08.31
	수탁고	1,509	1,467	1,043	301	259	179	55
	증가율*	2.83	40.72	246.68	16.01	45.09	222.02	
	*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의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를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위험선호도가 높은 공격적 간접 주식투자수요에 맞추어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우량종목(국내주식)을 발굴 투자하고 적절한 자산배분을 병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 및 주식시장 상승 대비 초과 수익률 획득 도모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약관상 편입비율(60%이상 100% 이하) 범위 내에서 주식에의 투자비율을 조정합니다. -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하여 좋은 종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다양한 투자 기법 구현하여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또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물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 아니며,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채권투자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유동성위험 등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신탁재산에서 주로 투자하는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종목별로 각각 가격이 변동하며 그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되므로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 투자에 따른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높은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고성장형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투자자 유형별 펀드위험등급

등급	위험 등급	투자자 유형					
1	매우 높은 위험	고수익 추구형	성장형 투자 전략을 추구하고 매우 높은 시장변동을 감수 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함.				
2	높은 위험	수익 추구형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비교적 높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자금의 일부분을 채권에 투자하여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함.				
3	중간 위험	위험 중립형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채권 등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일정부분 주식에 투자하여 주가상승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서 위험 중립형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함.				
4	낮은 위험	위험 회피형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채권 등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안정적인 성향의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함.				
5	매우 낮은 위험	안정지향형	단기 어려운 자금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함.				

[NH-CA자산운용사의 운용 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등급	차이나 포르테 주식투자신탁
2등급	농협CA 종자돈 적립 고배당 혼합1
3등급	농협CA 혼합 30-1호
4등급	농협CA 중기채권 시리즈
5등급	농협CA 개인신종 MMF1호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영업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이므로 설정시기,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학력	주요경력	협회등록번호
펠립페르슈름	1962	파리제 2 대학 재무전공 석사	자산운용 19년	05-01033-0020
김영준	1961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자산운용 16년 조사분석 5년	06-01033-0026

* 신탁재산운용은 팀제로 운용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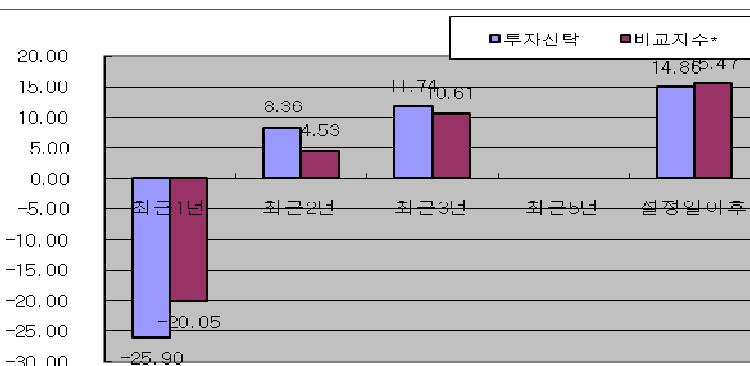
7. 투자 실적

*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단위:%]
	07.09.01 ~08.08.31	06.09.01 ~08.08.31	05.09.01 ~08.08.31	05.05.02 ~08.08.31	
투자신탁	-25.90	8.36	11.74		14.86
비교지수*	-20.05	4.53	10.61		15.47

* 비교지수: 0.95X KOSPI + 0.05 X call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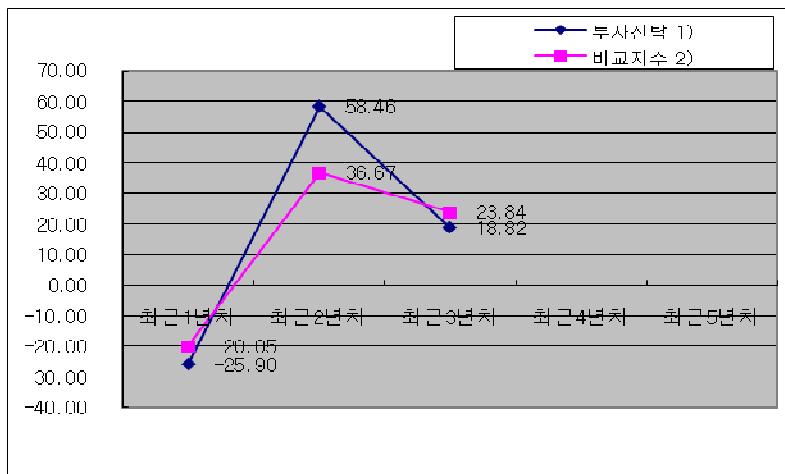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기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07.09.01 ~08.08.31	06.09.01 ~07.08.31	05.09.01 ~06.08.31	05.05.02 ~05.08.31	
투자신탁 1)	-25.90	58.46	18.82		
비교지수 2)	-20.05	36.67	23.84		

주1) 마지막 수익률 측정 대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음.

주2) 비교지수 : $(0.95 * [\text{KOSPI}]) + (0.05 * [\text{CALL}])$



* 연평균 수익률은 기하평균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산술평균법을 사용한 연도별 수익률과는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2. 수수료,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자산운용관리보수	순자산총액의 0.6%	매 3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시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1.4%	
	수탁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17%	
	기타	순자산총액의 0.6575%	별생시
	합계	순자산총액의 2.7045%	

* 기타비용은 선물옵션 매매거래 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기타비용비율 등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원)

투자기간	1년	1~3년	1~5년	1~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7,211	873,908	1,531,767	3,486,733

주)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3.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 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8년 4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국내 주식형 펀드 세제지원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준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준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준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명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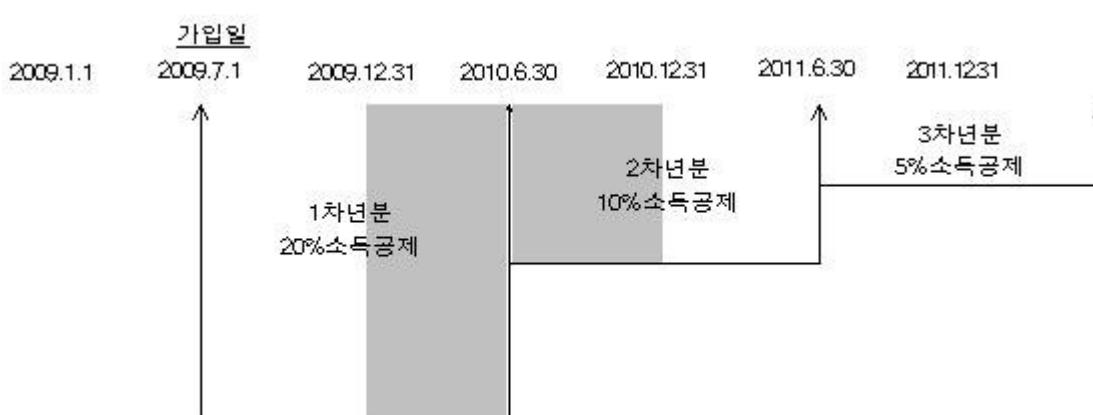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시장이며 향후 동 시장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IV.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온라인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 투자자는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1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매입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 제외)을 기준으로 합니다.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 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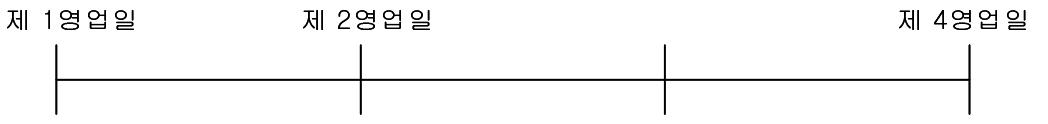
2. 환매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기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익증권 환매시 기준가격 등

- (1) **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2) **오후 3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 전일(3시 경과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환매수수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수수료를 정구하여 환매금액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판매회사 영업점의 청구당일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이익분배

- ①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 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 전략

I. 기본전략

-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약관상 편입비율(60%이상 100% 이하)범위내에서 국내주식에의 투자비율을 조정합니다.

II. 펀드운용전략

1) 포트폴리오 구성

- 소극적 자산배분전략을 기본, 모델포트폴리오 중심운용
-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비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 안정적 수익 추구
- 내재가치 위주로 투자, 철저한 Bottom Up 방식 접근

2) 종목선정기준

- 배당수익률이 안정적인 기업
- 저평가 기업
- 실적과 성장성이 좋은 기업

*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물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다양한 투자 기법을 구현하여 시장수익률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보수 및 판매회사보수중 일부를 후원기금으로 조성

이 투자신탁은 자산운용회사보수와 판매회사보수중 일부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후원기금으로 조성하며,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때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

1. 자산운용회사보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 판매회사보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다만 조성된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달라질수 있으며, 일부는 시행되지 못할 수 있음.

1. 어린이 및 청소년 금융교육관련 사업 및 그에 준하는 사업에의 지원

2. 어린이 및 청소년 장학사업

3.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관련 기타사업

4. 기타 수익자를 위한 사업 및 관련단체지원등

2.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 위험	본 간접투자기구는 투자의 직접적인 주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 됩니다. 또한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율 위험에 노출 됩니다. 신탁재산이 투자되는 국내 주식 및 채권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 이자율,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또한 개별 기업의 이익 현황, 미래 성장 가능성, 영업 환경 및 재무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등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개별 주식 및 채권의 가격을 등락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 투자 위험	위험관리와 초과수익을 위해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은 적은 증가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 높은 위험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 위험	신용위험은 투자 대상의 신용 상태가 변화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 국공채가 될 경우의 신용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신용채권의 경우 신용위험(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에 노출 됩니다. 즉 국내 채권 투자시 신용위험은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고 환매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까지 기간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타 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연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주요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주식	국내주식 60% 이상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국내주식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②채권	40% 이하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 사모사채 제외)
	③여음	40% 이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신용 등급이 A3- 이상인 것
	④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은 15%이하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⑤금리스왑 거래	채권또는채무 증서총액의 100%이하	
	⑥수익증권등	5%이하	신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다만, 법 제 137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⑦투자증권의 대여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⑧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	채권총액의 50%이하	
	⑨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투자 제한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 ③ 및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라. 3 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③ 및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예외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범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동조장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 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p>-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p> <p>-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간접투자기구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p> <p>-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p>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단기대출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단기대출, 파생상품 투자, 동일종목투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위의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후순위채	<p>이 투자신탁은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p> <p>※후순위채권 :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합니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p>	

II. 자신의 평가

1. 자산평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주요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체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체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체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별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체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증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선정절차 및 기준

- 1) 거래증권사의 조사분석서비스와 거래체결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함.
- 2) 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 거래 증권사 목록이 작성되며, 가장 높은 평기를 얻는 그룹에 상대적으로 높은 주문배분을 함.
- 3) 새로운 중개회사의 지명시 준법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함.
-준법위험관리위원회는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등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승인을 함.
- 4) 운용부서는 중개회사별 매매배분계획을 세워 이를 준수함.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본문 '제1부. 투자선택의 기본정보'의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중 '1. 매입' 의 내용 외 특이사항 없衾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본문 '제1부. 투자선택의 기본정보'의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중 '2. 환매' 의 내용 외 특이사항 없衾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본문 '제1부. 투자선택의 기본정보'의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중 '3. 분배' 의 내용 외 특이사항 없衾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자산운용회사명 : NH-CA 자산운용주식회사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02-368-3600)
- 회사연혁 :

연도	회사연혁
2002.4.5	농협과 CA-AM 간에 투신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 체결
2003.1.28	법인설립(자본금 300억, 농협 60%, CAAM 40%)
2003.3.28	금감위로부터 투신업 본허가 취득
2003.4.9	영업개시 및 첫 펀드 설정
2003.8.7	지문업 등록(금융감독원)
2003.10.29	투자일임업 등록
2004.5.14	Asian Investor로부터 2004 한국의 최우수 운용사로 선정
2005.3.1	Asia Asset Management로부터 2004 한국 최우수 신상품상 수상
2005.4.7	수탁고 7조돌파
2006.9.22	국민연금 SRI 펀드 운용사로 선정

2. 주요업무

자산운용회사 업무

-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 제1항의 기준기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의무 등
-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④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 및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례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업무의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기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기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기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기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기격계산업무를 [주아이티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에 있습니다.

3. 최근 2사 업연도의 요 약재무내용 (단위: 백만 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6.3말	'07.3말	항 목	'06.3말	'07.3말
유동자산	33,970	36,045	영업수익	11,317	11,332
고정자산	2,226	2,011	영업비용	7,735	8,538
자산총계	36,196	38,056	영업이익	3,582	2,794
유동부채	1,224	1,236	영업와수익	-	12
고정부채	163	57	영업외비용	1	1
부채총계	1,387	1,293	경상이익	3,581	2,805
자본금	30,000	30,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4,809	6,763	특별손실	-	-
자본조정	-	-	법인세	1,034	851
자본총계	36,196	38,056	당기순이익	2,547	1,954

4. 운용자산

규모
(2008. 8월
현재)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WF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총계
수탁고	12,203	10,727	3,713	53,384	12,283	0	0	444	0	92,755

[단위 : 억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사항

성명	출생년도	학력	주요경력	협회등록번호
필립페르슈롬	1962	파리제2 대학 재무전공 석사	자산운용 19년	05-01033-0020
김영준	1961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자산운용 16년, 조사분석 5년	06-01033-0026

* 신탁재산운용은 팀제로 운영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에 관한사항

1. 판매회사의 개요

판매회사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주소
교보증권	02-3771-9000	http://www.iprovest.com
국민은행	02-2073-7114	http://www.kbstar.com/
굿모닝신한	02-3772-1000	http://www.goodi.com
농협선물	02-3787-8200	http://www.nfutures.co.kr/
농협중앙회	02-2080-5114	http://banking.nonghyup.com
대신증권	02-769-2000	http://www.daishin.co.kr
대우증권	02-768-3355	http://www.bestez.com
대한생명	1588-6363	http://www.korealife.com
대한투자증권	02-3771-7114	http://www.daetoo.com
동부증권	02-369-3000	http://www.winnnet.co.kr
동양종합금융증권	02-3770-2000	http://www.myasset.com/
리딩투자증권	02-2009-7000	http://www.leadingkorea.com
메리츠증권	02-785-6611	http://www.imeritz.com
미래에셋증권	02-3774-1700	http://www.miraeasset.com
부국증권	02-784-1010	http://www.bookook.co.kr
부산은행	1588-6200	http://www.pusanbank.co.kr/
브릿지증권	02-3779-3000	http://www.bridgefn.com
삼성생명	1588-3114	http://www.samsunrlife.com/
삼성증권	02-2020-8000	http://www.samsungfn.com/
서울증권	02-368-6114	http://www.seoulstock.co.kr
신영증권	02-780-7000	http://www.shimyoung.com
신흥증권	02-3787-2114	http://www.shs.co.kr
우리투자증권	02-768-7000	http://www.wooriwm.com/
유화증권	02-3770-0100	http://www.yhs.co.kr
이트레이드증권	1588-2428	http://www.etrade.co.kr/
키움증권	02-3787-5000	http://www.kiwoom.com
푸르덴셜증권	02-3770-7114	http://www.prucyber.com
하나증권	02-3771-3000	http://www.clickhana.co.kr
한국투자증권	02-768-5000	http://www.hantutams.com
한양증권	02-3770-5000	http://www.hygood.co.kr
한화증권	02-3772-7000	http://www.koreastock.co.kr
현대증권	02-783-6511	http://www.youfirst.co.kr
한불종합금융	02-777-7711	http://www.sogeko.com/
홍국증권중개	02-780-9290	http://www.hksec.co.kr
CJ 투자증권	02-318-9111	http://www.cjcyber.co.kr
KGI 증권	02-3770-9000	http://www.kgieworld.co.kr
NH 투자증권	02-2004-4114	http://www.nhis.com
SC 제일은행	02-3702-3114	http://www.scfirstbank.com/
SK 증권	02-3773-8245	http://www.priden.com
코리아RB증권	02-550-6200	http://www.korearb.com/
광주은행	062-239-5000	http://www.kjbank.com

하나은행	1588-1111	http://www.hanabank.com/
전북은행	1588-4477	http://www.jbbank.co.kr/

-위 판매회사 개요는 당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들로 해당 간접투자증권의 실제 판매회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업무

■ 의무 및 책임

- ①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② 수익증권 환매업무
- ③ 수익증권 교부업무
- ④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⑤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⑥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①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 ②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합니다.
- ③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 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1. 수탁회사의 개요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전화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 2 가 120	02-756-0505

2. 수탁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신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생되는 산주의 수령
-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 ①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 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일반사무 관리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신한아이티스㈜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 연 혁 : - 설립일 : 2000년 6월 15일
- 자본금 : 20.03 억원

2. 수탁받은 주요 업무 내용

- ① 자산의 평가
- ②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의 기준가격 계산업무
- ③ 간접투자자산의 신규계약, 추가납입, 일부인출, 계약해지
- ④ 순자산가치의 산정
- ⑤ 순자산가치를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지정하는 자에 통보
- ⑥ 회계처리 자료의 제공
- ⑦ 기타 회계처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 ①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채권평가회사 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광화문빌딩 9층
	연락처	02-3770-0400	02-399-3350
	설립일	2000. 6. 20.	2000. 5. 29
	등록일	2000. 6. 29.	2000. 7. 1.
	자본금	30억원	50억원
	연혁	2000.6. 키스채권평가(주) 설립	2000. 5. 국내최초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

2. 주요 업무 내용
용
-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퍼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결사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수탁회사 변경, 신탁기간 변경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의결권>	(1) 의결권은 1회마다 1개로 합니다. (2)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총회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1)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익자는 자산운용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업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소집 주체 및 통지>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수익증권총좌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의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③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시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에 관한 사항	①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②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간접투자재산명세서2. 간접투자증권기준기격대장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5.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기변동들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에 관한 사항

1. 장기공시 및 보고서	구 분	공시주기	공시내용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 (www.fss.or.kr) 및 자산운용협회 인터넷홈페이지 (www.amak.or.kr)	영업보고서	매 분기 종료후 20일이내	1. 일반 현황 2. 세부 현황 3. 기준가격표 4. 주요 영업수익 구성 현황 5. 과생상품 현황 6. 의결권공시사항
	결산서류	매 결산일로부터 2월이내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유가증권내역 4. 법제 121 조의 자산운용보고서
	감사보고서	매 결산일로부터 2월이내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준가격계산서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 보고서 및 수탁회사 보고서 >	구 분	제공 내용	제공 절차
	자산운용 보고서	1. 기준일(회계기간개시일로부터 3 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 부채 및 기준가격 2. 운용경과의 개요 및 운용기간중의 손익상황 3. 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각각의 비율 4.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월에 1 회 이상 간접투자자에게 제공
	수탁회사 보고서	1. 신탁약관의 주요 변경사항 2.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4. 법 제 132 조제 1 항 각호의 사항 5. 법 제 9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월 이내에 간접투자자에게 제공

2. 수시공시

①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nh-ca.com)·판매회사(하단참조)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의자총회의 의결내용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자산운용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때에는 수의자가 당해 의결권행사여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의 내부지침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긴접투자기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3.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시행령 제79 조제1 항 또는 제2 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명 : 농협CA 아이사랑 적립 주식투자신탁 1호

판매일 : _____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CA 아이사랑 적립 주식투자신탁 1호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농협CA 아이사랑 적립 주식투자신탁 1호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
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